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9일, 김위상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2.4.) 상정, 축조심
사, 의결(수정가결)

제1차 전체회의(2026.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위상의원)

현행법은 시·도지사도 하여금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3년마다 1회 이상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이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5년)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행주기(3년)와 달라 시·도지사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움.

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으로 조정하고,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현황 파악을 통해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공해방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빛공해방지계획은 인공조명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며, 빛공해환경영향

평가는 해당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분석·진단하는 평가 제도임.

[빛공해방지계획 및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개요]

빛공해방지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 5년마다 수립 -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 수립·고시('23.12) (시·도) 5년마다 수립 (목적)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 보호,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 (추진 방식) - 전국적인 빛공해 현황 및 피해 추이 분석 - 단기 및 중장기적인 방지 목표 설정. - 조명 관리 기준 개편 (시각적 불편함 반영). - 빛공해 방지 방안을 옥외광고물 허가사항에 포함 등.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 적용 검토.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체) 시·도지사 (주기) 3년 (목적) -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 분석 -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마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참고 (평가 항목) - 지역 환경 영향 : 자연 및 생활 환경 현황 - 조명 현황 : 조명기구 설치·관리 및 빛 공해 현황 - 빛 공해 영향 분석 : 주변 지역에 미치는 빛 공해 영향

그러나 두 제도의 시행 주기가 각각 5년(계획)과 3년(평가)으로 달라, 시·도지사가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최근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이에 개정안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에 실시된 평가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빛공해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부칙은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계획 수립 1년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빛공해 방지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수정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2.

제 안 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시·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1년 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특례에 따르면 일부 시·도의 경우 3년 이내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3조제2항 신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1년 이전”을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되기 1년 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되기 전 3년 이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 ----- ----- ----- ----- <u>-----.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u>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동일함)	② ~ ④ (개정안과 동일함)

제16조(빛공해환경영 향평가) 시·도지사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 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 향을 <u>3년마다</u>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음) 제16조(빛공해환경영 향평가) ----- ----- ----- ----- ----- <u>5년마다</u>----- ----- ----- -----.	같음) 제16조(빛공해환경영 향평가) (개정안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빛공해환경영향 평가 결과의 시· 도 빛공해방지계획 반영에 관한 적용 례) 제5조제1항 후 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도지사가 시·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 안과 같음) 제2조(빛공해환경영향 평가 결과의 시· 도 빛공해방지계획 반영에 관한 적용 례) (개정안과 같 음)

	도 빛 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특례)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해당 <u>시·도 빛 공해 방지 계획 수립 1년 이전</u>에 실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3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특례) ① ----- ----- ----- ----- ----- 시 · 도 빛 공 해 방 지 계 획 이 수 립 되 기 1 년 전 ----- -. ②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시·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1년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시·도빛공해방지계획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도지사가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되기 1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되기 전 3

년 이내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빛공
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 ----- ----- ----- ---. <u>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u>3년마다</u>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 ----- ----- ----- ----- ----- <u>5년마다</u> ----- ----- -----.